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2 No.1 Serial No.96 _ 2013. 02

국내외 경찰서 유치시설의 환경 실태 분석*

Analysis on the Actual Environmental Conditions of Domestic and Oversea Police Detention Facilities

Author 조현미 Cho, Hyeonmi / 정회원, 부천대학교 건축과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t up the standard guideline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By visit-studying the actual interior environmental conditions of 5 different kinds' domestic Correcting Facilities and 5 domestic police detention facilities and 2 foreig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comparing them to the existing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cell facilities, tha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had been analyzed to extract the main concepts and the planning scheme for the Standard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By reserching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tee's Anual Reports, three different indexes were picked out for those analysis : 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These three indexes will be used as Key factor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①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o establish the Space Program, the Spatial Hierarchy and the horizontal & vertical Security Blocks, ②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for the central Environmental Control & Security System, the Secured Privacy for both detainees & police offices, ③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for the gender-respected segregation of cell zones, the psychological & physical safety design factors, the construction standards of all rooms in a detention fac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 Plans and Regulations for the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to respect fundamental human rights.

Keywords 경찰서 유치시설, 표준설계기준, 환경적 제어, 업무적 지원, 환경적 지원
Police Detention Facility, Standard Planning Codes, Environmental control, Detention Task support, Environmental suppor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대한민국 행정기관 중에 가장 많은 수의 근무자가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고 대민업무 중 가장 민감한 치안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경찰서이다. 경찰서 유치장은 수용되는 연간 10만 명[1] 이상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최초의 구금 장소이므로 유치장의 인권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사회적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유치인 인권보호를 인지하고 유치장매뉴얼을 제정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표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국민의 인권의식이 선진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에서 반복하여 제시되고 있는 유치시설의 '유치인처우'에 관한 문제점 제기는 조사의 주체가 다르더라도 인권보호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조사결과로서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책의 이행정도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유치장설계표준규칙」은 유치실에 관한 최저면적기준 등은 있으나, 평면배치는 다이어그램으로 되어있는 등 상세한 세부내용이 결여되어 건축설계과정에서의 적용을 할 수 있는 표준으로서 기준을 면밀히 제시하지 않는다. 둘째, 경찰서 유치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적인 내부 환경의 개선책은 경찰서 건물의 전체 공간배치로부터 유치장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관한 건축적인 제반사항의 검토 없이 특정업무매뉴얼 제정이나 부

* 이 논문은 2011년도 부천대학교 교비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연구의 결과임.

1) 2011년도 연간 유치인 수용현황은 16개 지방경찰청 및 4개 지방해양경찰청 전체의 연수용인원이 329,247명이고, 실제수용인원은 101475명이다.

분적인 시설개선 등 일회성 이행사항으로 이슈가 된 문제점만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보호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유치장표준설계를 새롭게 개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공간·환경·업무 측면에서 유치장 공간을 기본부터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 경찰서 유치시설과 법무부 교정시설 및 해외 경찰유치시설의 실태조사를 하여 현황, 문제점 및 장단점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유치장 표준설계" 기술연구에 적용하게 될 공간계획의 주요 개념 및 세부 적용 방안들을 추출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은 크게 국내외 유치 및 교정시설의 실태조사와 유치장 관련 문헌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경찰유치시설 및 국내 법무부 교정시설 내 유치시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분석 하기 위하여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유치장 관련 선행논문, 경찰청 업무보고자료 및 유치장 업무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절차 상 실태조사는 경찰청 유치장 운영관리 담당자와 동행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최근에 신축된 일자형 배치사례만 실태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운용중이거나 시설만 갖추고 비운용중인 유치장의 시설현황 실태조사를 하여 유치장설계기준이 되는「유치장설계표준규칙」[2]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경찰서 유치장은 최근 3년 이내 신축되고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1급지 경찰서 유치장 5개소를 방문 조사하였다. 둘째, 법무부 교정시설의 실태조사 및 설계기준과의 비교를 하였다. 민영교도소 1개소, 구치소 2개소, 구치감 1개소 및 국제공항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임시보호소 1개소를 방문하여 거주공간(수용동, 수용실), 시설통제, 감시를 하는 시설(통제실, 상황실), 접견시설, 입출감시설, 교화시설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해외경찰서 유치시설의 실태조사, 유치장 및 표준설계기준 유무에 관한 경찰청 업무보고자료[3]를 비교분석 하였다. 경찰조직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정하여 동경경시청 산하 경찰서 중에서 유치장표준설계를 적용하여 3년 전에 신축되어 현재 운영 중인 경찰서 광역유치장(도심고층형, 여성전용유치장 포함)를 답사하였다.

2) 경찰청 예규 제349호<2006.3.22. 전개>, 훈령 제514호 <개정 2007.10.30.>

3) 경찰서 유치장에 관한 자료는 특성 상 대외비로 구분되므로, 해외경찰서 유치장에 관한 경찰청 조사 업무보고는 경찰청 경무과의 협조 하에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였음을 밝히며, 본 연구에서는 비교결과 만을 제시한다.

2. 국내 경찰서 유치장 현황 분석

2.1. 유치장 설치 및 운영의 법적인 기준

유치라 함은 피의자·피고인·구류인·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증거인멸, 자해, 통모행위, 도주원조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최장 1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뿐 아니라, 기소된 피의자도 경찰서 유치장(대용감방)에 수용될 수 있다.[4]

경찰서는 미결구금시설로서 1차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 역할을 한다.[5] 구금되는 대상은 피의자(피고인, 구류처분을 받은자 및 입감의뢰자)로서 주로 미결구금자에 해당하는 구속이 확정될 예정인 사람들이며, 야간의 벌금미납자, 주취자 중에 즉시 귀가조치가 어려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이다.[6]

경찰서 유치장의 설치근거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9조[7]에 근거하고「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유치장설계표준규칙」으로 유치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법무부교정시설[8] 설치기준과 별개로 되어

<표 1> 유치인 유형별 분류

법적 처분	유치인 유형	근거 법령
미결구금	영장 없이 체포된 사람(긴급체포, 현행범체포)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구금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형사소송법 제212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구금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구속영장이 발부된사람으로 검찰송치 이전단계의 구금	· 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해당 지역에 구치소가 없어 유치장(대용감방)에 구금된 피의자 및 피고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72조
형 집행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사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 제2항
법원처분 집행	법정에서 감치처분을 받은 사람	· 법원조직법 제61조 ·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의뢰입감	구인절차 중 일시 유치된 사람	·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기타	국가정보원 등 다른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으로 유치	·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벌금미납으로 인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검거된 경우로 야간임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 국가정보원법 제15조

4) 김태명, 경찰서유치장 관련법령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2008, pp.149-150참조

5) 임준태, 유치장내 질서유지와 신체수색의 한계, 형사정책 제14권 1호, 2002, pp.224-225

6) <표 1> 참조

7) 제9조(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개정1996.8.8., 1999.5.24.>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를 법무부 '교정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구치감은 검찰 및 법원출두를 위한 주간보호만 하고, 외국인임시보호소도

있으며, 법무부교정시설의 경우 표준설계 규칙에 치수가 명기된 표준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제시되나, 경찰서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은 다이어그램유형의 배치도가 첨부되어 있으며, 유치장 실내계획상 필요한 도면, 면적 및 치수 등의 세부 사항들이 제시되진 않는다. 실태조사에서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명기된 사항임에도 시공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유치장표준설계'를 제시하여 실무에서 적용이 용이하도록 건축 연구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규칙'의 제정을 위한 법 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유치장 운영 주체

대한민국 경찰의 설립 이래 67년 동안 수사의 주체인 수사과에서 경찰서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장 운영을 범죄수사의 연장으로 인식하여왔으며, 유치장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취약하여 법무부 관할의 교정시설에 비하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표준의 제시가 미비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시스템의 근간이 되었던 일본[9]의 경우 1980년 이전까지는 경시청 및 지방경찰청 산하조직인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유치관리를 하였으나, 1980년부터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형사시설, 유치시설 및 해상보안시설을 통틀어 형사수용시설로 정의하고 경찰 유치시설에서 '유치와 수사의 분리'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도 유치와 수사를 분리하여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하고자 2010년 하반기부터 유치장운영부서를 경무과로 이전하는 시범운영단계를 2012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였고 운영부서를 변경하기 위한 직제 개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10] 2012년 유치인보호관 신규발령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유치인 보호관 전문화교육 직무과정'을 경찰교육원에 개설하여, 관련규정 및 실무매뉴얼, 인권의식 함양,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2.3. 유치장 운영 및 유치인 수용 현황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16개 지방경찰청이 있고, 총 249개 경찰서가 있으며, 현재 운영되는 112개 유치장 중에서 '수사와 유치의 분리'를 목표로 경무과에서 시범 운영[11] 중인 경찰서가 34개소이다. 대용감방 5개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찰서유치장은 107개소이고 그 유치실수가 874개이므로, 개별 경찰서별로 '평균8개' 유치실을 운영 중이며, 유치인보호관의 남녀 성비는 총인원 1026명 중에서 남성보호관 88.88%, 여성보호관 11.11% 이다. 여성보호관이 여성유치인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고 24시간 입출감절차(신체검사) 및 보호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치인보호관의 남녀비율과 연간 유치인 실수용인원의 남녀비율을 감안해보면 여성보호관 비율 8.98%는 여성유치인 10.76%에 대비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여성경찰관의 숫자가 일부 지방경찰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여성유치인이 입감되는 시간이 야간이거나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는 유치보호팀의 경우 경찰서의 당직 여성경찰관이 유치장에서 대체근무를 하게 된다.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유치장 운영 비율이 높거나 여성유치인 비율이 높은 경찰서가 있는 지방경찰청은 여성전용유치장을 1~2개소 규모로 설치하고 여성유치인보호관을 팀으로 구성하여 배정하는 인권보호 차원의 여성유치인 지원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서울, 인천, 부산 지방경찰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운영되는 경찰서유치장 수도 많은 광역시이므로 추후 시범적인 여성전용유치장 운영의 적절한 대상지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표 2> 유치실 및 유치인보호관과 유치인 성별 현황(2012년 기준)

구분	유치장수	유치실수	유치인보호관			유치인		
			총 인원	남	여	실 수용인원	남	여
계	112	929	1,082	971	111	-	-	-
유치장	107	874	1,022	912	110	101,475	92,367	9,108
대용감방	5	55	100%	91.02%	8.98%	100%	89.24%	10.76%

※ 강원속초, 충북영동, 전북남원, 경북상주, 경남거창 5개 경찰서 대용감방 운영

<표 3> 지방경찰청 별 유치장 운영 현황 (2012년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서	249	31	15	9	9	5	5	4	41	17	12	15	15	21	24	23	3
유치장	112	23	6	4	4	3	2	1	17	9	5	6	5	6	11	9	1
(수사)	78	21	0	0	0	2	0	0	17	8	0	5	0	6	10	9	0
시범(경무)	34	2	6	4	4	1	2	1	0	1	5	1	5	0	1	0	1

2.4. 유치장 시설표준의 분석

기존 「유치장표준설계규칙(2006 개정)」을 살펴보면 특히, 유치장을 건축하여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목적에 맞추어 유치장 시설자체의 보안 및 유치인보호 라는 관점에서 설계의 방향설정이라든지, 설계지표 및 세부내용을 제시함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있다. 또한, 유치장 내

1일~10일정도의 단기보호만 하는 교정시설에 해당한다.

9) 이영돈, 유치장과 피의자 유치의 법적근거, 치안논단⑧, p.215. 유치장의 연혁 참조: ...1910년도에 이미 경찰서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09기유각서에 따라...일본의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었다.

10) 이관 추진상황 (경찰청 경무과 자료)
- 2010.09 유치장 관리부서 개선 검토 지시
- 2010.11 유치장 관리부서 전환 추진
- 2011.05 유치장 관리 적합부서로 경무 확정
- 2011.05 직제 개정 추진

※직제 개정전까지 경무주관 유치장 34개로 한정 운영, 개정시 전국 확대

11) 경찰청에서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수사과정상 유치인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시키고 인권친화적 경찰상 확립, ②범인검거는 수사에서, 유치관리는 경무에서, 인권감시는 청문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3각 체계에 입각한 상호 견제와 균형 달성

모든 실별 면적기준, 가구배치 및 환경설비의 설치를 위한 세부시설기준 등이 추가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치장 설계에서 근본으로 중시되어야 하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12]'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유치장시설 설계에 필요하지만 미비한 사항들을 분류하여본 결과로서 환경제어, 업무지원, 환경지원 지표들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치장보안을 위한 환경제어, 유치인보호관의 유치인보호 업무지원, 유치장의 거주 가능한 환경지원 측면에서 지표들을 설정하여 실태조사의 잣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4> 유치장설계표준규칙(2006 개정)

분류	유치장설계표준규칙 개요
목적	· 경찰서 유치장의 신축·개축 또는 시설 개선에 따른 설계 표준을 규정함
위치	·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함 · 다만, 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외부와의 통모, 도주 및 기타 탈취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의 관망을 차단하고 대화소리 등이 들리지 아니하는 위치와 구조로 하여야 함
시설	· 유치장에는 유치실, 보호 유치실, 접견실, 신체검사실, 샤워장, 물품보관실, 조사실, 유치인보호관 휴게실, 화장실 등을 설치 · 환기, 냉난방, 비상구, 경보벨,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시설을 설비
설계	· 유치실을 일자형으로 배치 · 천장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 · 2층 이상의 구조로 할 수 있음 · 유치장 및 유치실에 채광창 및 환기장치를 설치, 천장 및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벽면 · 유치장에는 각각 서로 다른 사무실로 통하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하되,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
유치실	· 면적은 13.2평방미터 이상, 개수는 6실 이상, 1실당 수용인원 5인 이상 · 벽은 내화구조, 바닥에는 바닥난방시설 · 전면부는 직경2cm내외 봉강 설치, 0.15m간격을 두고 세로로만 설치 · 유치실 출입문의 크기는 높이 1.8m 폭 0.75m, 재질은 봉강, 밖으로부터 열도록 견고한 시건장치, 시건장치의 창살간격은 0.05m · 유치실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 · 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을 수용 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표 5> 「유치장설계표준규칙(2006 개정)」의 문제점 분석

분류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의 분석
목적	· ['인권 보호하는' 경찰서 유치장의 신축·개축 또는 시설 개선에 따른 설계 표준을 규정함]으로 개정할 필요 있음
위치	· 현재 국내유치장은 단독건물로서 1층 배치 원칙 때문에, 경찰서 주동의 배면에 대부분 북향 배치하는 단점 내제. · 외부관망 차단 위해 1층 벽면에 창문 대신 채광용 천창 설치, 노후화된 천창의 오염도높아서 채광기능상실 및 누수문제.
시설	· 운동실, 의무실이 시설규정에서 누락되었으나 UN제정「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상 필수 시설로서 필요 함
설계	· 일자형 배치에서 유치홀 면적이 유치실 총면적보다 커서 공간배분 비율상 과다(그림1. 참조) · 사고방지 목적의 유치실 천정고(3~4m)가 유치실의 바닥면적 대비 너무 높아서 심리적 불안감 조성, 냉난방 효율 저하 · 대부분 유치장 2층은 폐쇄되어 미사용, 유치실 총 개수와 적정수용인원 재조정 필요 · 수시 개폐 가능한 친환경적 채광환기창 시설 필요 · 보안출입구의 목적 상 보안단계별 영역 설정 필요
유치실	· 면적, 개수, 1실당 수용인원 책정의 근거 필요 · 벽, 바닥, 천정 마감재 기준 필요 · 전면부 철창형태의 위압감를 개선하는 인권친화 디자인 필요(철창 모서리, 봉강의 수평 부재 설치에 의한 유치실 자해사고 요인 제공) · 출입문은 장애인 및 노약자 휠체어 출입 가능한 실 지정할 필요 · 현재 대부분 유치실 내부조명 없고 유치홀 천장에 투시등 설치하여 유치실 내 그림자 발생, 내부 관찰이 불가능한 문제 있음 · 기존유치장에서 장애인유치실 시설 미비, 신설유치장에는 시설 완비

* 분석 내용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등 유치장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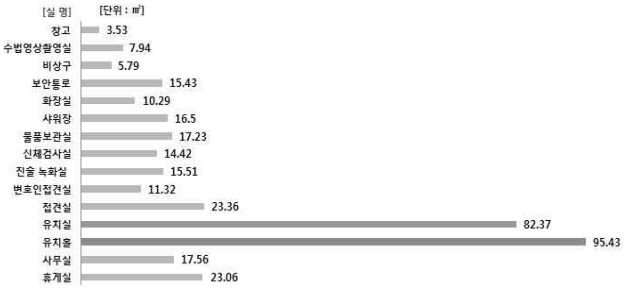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9개 경찰서유치장(일자형) 평균 실별 면적

3. 국내외 유치 및 교정 시설의 실태조사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의 일자형배치를 기준으로 적용한 유치장에 대한 실태조사[13]는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경찰청 경무과의 협조로 선정된 대상지를 방문하여 관찰조사 및 관리자인터뷰, 사진촬영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환경적 제어, 환경적 지원, 업무적 지원의 세 가지 지표

<표 6> 경찰서 유치장의 설계 지표

지표	요소	정의
환경적 제어	배치	**공간 프로그램** · 채광, 통풍이 유리한 유치장 위치: 2층, 남동/남서향 배치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치실(청소년, 여성, 장애인)배치기준 · 유치장 내 기능별 실의 종류 및 개수, 실별 적정면적기준
	동선	**보안출입구 동선 경로** · 공간 위계성 정립 : 평면상의 수평적 공간배치 및 단면상의 수직적 공간배치 · 유치장 내부공간의 보안단계별/기능별 동선 시스템 · 유치인 입/출감 절차를 반영하는 동선 경로
	구획	**보안 구획** · 24시간 유치장운영: 주/야간 보안체계 반영하는 보안구획 · 수평 보안구획 : 보안단계별 공간 세분화 [유치감독관⇔전이⇔생활⇔유치관리스테이션⇔거주(유치실)] · 수직 보안구획: 호송차⇔경찰서내부⇔유치장이동경로보호 [호송차전용주차장⇔형사당직출입구⇔유치장2층(상황실 인접)]
업무적 지원	출입통제	**출입문 및 보안구획의 단계별 개폐 통제** · 보안 단계별 유치인 이동 통제 · 유치인감독관(유치장 외부출입문), 유치인보호관(유치장 내부출입문, 유치실문)의 이원화된 열쇠관리. · 비상(화재, 난동, 사고)상황에서 유치장 보안출입복도 개폐
	보안	**유치인보호관 업무지원 시스템** · 유치인 행태 관찰 보안시스템(문개폐경보, 모션센서, CCTV) · 유치장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제어시스템(환경, 소방, 피난) · 현황 고지 시스템(입출감 현황 및 유치인 일과 현황)
	보호	**유치인 생활 보호** · 유치인 생활지원을 위한 의식주 생활지원, 접견지원(일반인 접견 시 면회 관찰), 목욕지원, 진료지원 및 심리상담 · 유치실 문, 화장실의 자해 및 사고방지 시설 기준 · 사회적 약자 위한 유치실(청소년, 장애인, 주취인, 외국인) 기준
환경적 지원	인권	**수사와 유치의 분리** · 범인검거는 수사에서, 유치관리는 경무에서, 인권감시는 청문에서 담당하는 상호견제 시스템 · UN제정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재정립: 2006년 개정된 "유치장 표준설계 규칙"에서 누락된 운동실, 의무실 시설 조항 등의 준수
	생활	**유치인, 유치인보호관의 프라이버시 상호보장** · 유치실 생활 편의제공기능이 유치장시설설계 및 운영에 임의 반영되는 문제 해소 · 유치인, 유치인보호관 사이의 상호 프라이버시 보장 · 유치실의 성별 공간구획 기준 · 유치장 생활의 의식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12)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용역 사업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13) <표 7> 실태조사 참조

<표 7> 경찰 유치시설 및 법무 교정시설 실태조사 결과(2012.06~2012.07 시행)

시설 실태	환경적 제어			업무적 지원			환경적 지원	
	배 치	동 선	구 획	출입통제	보 안	보 호	인권	생활
• 유치실 간 소음방지 대책 미비 • 변호사접견공간에 대한 배려 미비								
OJ경찰서	유치인 생활의 노출	필요이상으로 큰 유치홀	보호유치인을 위한 유치실	유치자 이동 경로의 노출	유치스테이션의 보호관업무 노출	호송차량 입구	장애인 출입을 위한 경사로	유치실 채광을 위한 천창
• 채광,통풍 문제 • 보호관시설 미비 • 층고 높아서 소음문제가 있음								
DB경찰서	유치인 생활의 노출	유치홀 내부	유치실 내부	유치실 외부 CCTV	산만한 환경제어 패널	보안이 취약한 비상문 개구부	수납공간의 부족	인지도가 낮은 안내게시판 위치
• 색채, 음악 등을 이용한 유치환경 조성 고려 필요 • 유치인보호관 수의 부족(3-4인/1팀)								
BD경찰서	유치인 생활의 노출	사용 빈도가 낮은 2층	외국인 유치실	보안이 취약한 비상구 개구부	비효율적 station	위협적인 창살	별도공간의 부족	정돈되지 않은 내부 집기
• 국내최초 고층 구치소. 8-9층규모 2개 수용동 등 11개 부속건물 구성 • 감시대,주벽,철조망 등 기존 교정시설 전통적보안시설 없음								
SW구치소	화재대피 안내	구치소 출입 통제	시선차단을 위한 가림판	층별 통제를 하는 보안통제실	방문자 확인을 위한 형광인식기	구치인 ELEV. 내부 보안칸막이	여성변호인 접견실	신입교육(입감/신체검사절차 수행)
• 1470명 수용(1500-2000명 수용가능) / 형량 5년이하초범수용자 • 지상12F-지하2F								
IC구치소	복도형 거실	보안 출입구	거실 내부	중앙통제실	구치인 신체검사	변호인 보호를 위한 비상벨	실내 운동장	응급환자용 장비
• 수용자 내적번화를 위하여 직원,자원봉사자, 전문멘토 협력, 맞춤형 프로그램(I.P.I.R) "수용자 내적 변화와 회복"을 체험								
A민영교도소	보안구획에 따른 공간 분리	구역별 통제를 위한 보안문	쾌적한 거실 내부	중앙통제실	금속탐지기, 호송차량 보안	통제실과 소통을 위한 인터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텃밭	위생을 위한 세탁기, 건조기
• 보호관찰실에만 CCTV 설치 • 총26실 1인8실, 1py, 3인10실, 1.4py 5인8실, 2.3py • 여성구치자 분리 보호								
GY구치감	호송차량 출입 통제공간	외부복도형 유치실	3인실 5인실	통제시스템	중복도 벽면 각종안내	직원 식당 및 휴게공간	호송차량 입구	구치감,법원,검찰청의 지하통로
• 장기수용자는 화성, 여수, 청주 외국인보호소 이송 • 구금 1日-15日-30日(평균2-3일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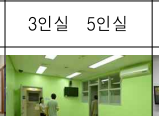					
IC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	복도형 거실	외부복도형 유치실	5인실	보안통제실	금속탐지기	보안 출입구	각종 안내물	영치물품보관실
• 총면적 8.051㎡(3-7층) • 지휘소1실(3F) • 유치사무실 층별 • 보호실8실/면회실16실(층별 2실) • 조사실 100실(층별 25실) • 수사와 유치관리는 분리								
일본 동경 H경찰서	유치실 전면부 가림판	입출감 대기공간	유치실 내부	중앙통제실	인원현황 통계	거실 통제 패널 비상벨	실내 운동장	세면도구 보관함
• 수사와 유치관리는 분리 (cutody officer 제도 시행) • 임시유치실 시설 • 남녀 유치실 영역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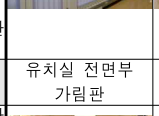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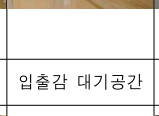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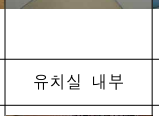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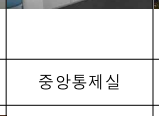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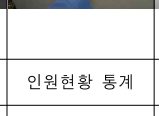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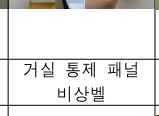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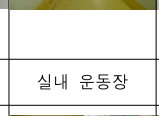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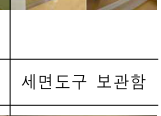
영국 런던 S경찰서	복도형 거실	거실 내 관찰을 위한 장치	임시 유치실	유치 Station	유치 Station PC보안커버	보호관 안전을 위한 비상벨	의료실 거실 내 침상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로써 분석하였다. '환경적 제어', '환경적 지원', '업무적 지원' 세 가지 지표는 <표 6>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유치업무공간 계획에 적용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지표들의 세부 설계요소 항목들을 추출하여 실태조사의 분석틀로서 사용하였다.[14] 이러한 지표 및 세부설계요소들은 기존의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서 결여된 시설 계획특성으로서 새롭게 유치장표준설계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3.1. 국내 경찰서 유치장의 배치 및 시설 특성

(1) 배치 유형

국내 경찰서 유치장은 일자형, 1층, 북향의 배치 특성이 있다.「유치장설계표준규칙」은 기존의 반원형 유치실 배치형태로 인한 유치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형 유치실 배치로 2006년 개정되어졌다. 경찰청에는 16개 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249개 경찰서가 있고, 2012년 10월 현재, 112개 경찰서유치장이 운영되고 있다.

112개 유치장 중에 일자형배치 유형은 15개소, 반원형배치 유형은 97개소로서, 여전히 소수의 유치인보호관들이 유치장 내부 홀로부터 유치실 직접감시가 용이한 반원형의 팬옵티콘(panopticon)[15] 배치가 전체의 87%에 달하는데 이러한 배치는 역설적으로 보호관의 동선이 유치인에게 노출되어 감시당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97개 반원형 유치장은 일자형으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연간 신축 추세라면 30년 이상 소요될 것이므로 신축경찰서에 시설되는 일자형배치 유치장은 1급지 경찰서가 아니더라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경찰서가 매년 3개소 내외로 신축 준공되고 있고,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 때문에 유치장이 실제 운영되지 않는 경우[16]에도 1층에 유치장 시설을 완비해 두어야하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요인이 된다. 규정상 유치장은 외부의 관망이 어려운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므로, 대부분 경찰서 본관의 배면에 별동으로 건축되어 북향의 불리한 방위를 가지고, 지상1층 유치실이 외벽에 직접 면하는 배치이므로 1층 벽면에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개폐할 수 없는 고창(천창)을 설치하므로 인해 채광, 통풍, 환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내제되어 있다. 신축서의 경우 대형 환기팬을 시설하였으나, 유치홀에 직접 설치되어 내부소음발생요인이며 외부공기의 직접유입으로 인해 유치홀의 적정온도유지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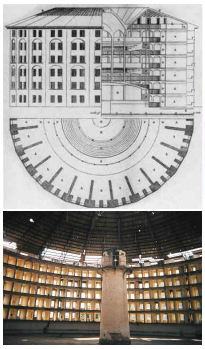

<그림 2> Panopt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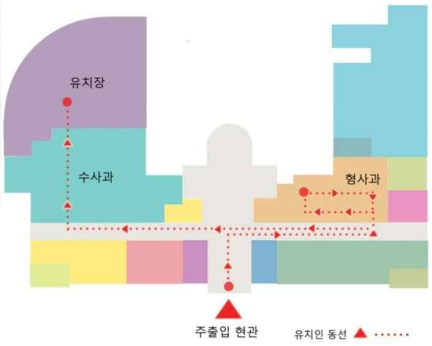

<그림 3> 유치인 입출감 동선

(2) 입출감동선 경로 및 출입구

현행「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유치장의 출입구는 도주방지를 위하여 유치장외부 사무실을 통과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대부분의 경찰서는 유치장을 관리해온 수사과 수사지원팀 혹은 경제(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을 거쳐서 유치장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어있다. 수사팀은 출두서류를 받은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을 주간업무시간대에 조사하므로 유치인 입출감동선의 경로[17]가 항상 노출되어 프라이버시 보장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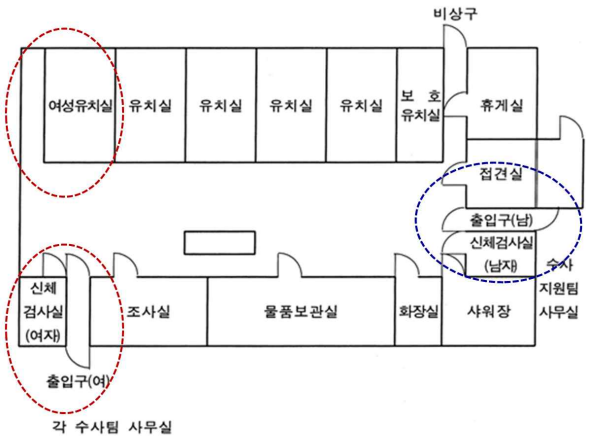

<그림 4>「유치장설계표준규칙」의 부도 제1호

'유치장설계표준 부도'에는 유치인의 성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중 보안출입구 통로를 2개소로 남녀영역을 구분[18]하고 있다. 유치실전체가 개방형 홀에 면하기에 2개의 출입문 규정은 지켜지나 출입구 및 통로 구분의 취지는 준수되지 않고 있다.[19] 남녀 유치인의 분리된 출입구, 신체검사실, 샤워실은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실제 유치장 실태조사결과, 제한된 유치장 면적을 감안하여 성별 분리된 남녀공간

14) <표 6> 세 지표는 일반적으로 업무공간 설계시 사용하는 광의의 계획 개념이며, 유치업무도 특수하지만 경찰서 업무환경의 하나이므로 적용하였다. 단, 유치실 수감자는 10일 이내 미결수 단기수용 개념으로 대상이 제한되므로 주거공간의 요소가 전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으며, 최소한의 거주를 위한 생활 환경지원 개념을 포함한다.

15)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제안한 원형 모양의 감옥 건축양식으로, 소수의 감독자가 자신은 노출시키지 않은 채 모든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을 제안하였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16) 광역유치장 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경찰서에 유치장을 운영하지 않고, 지정된 1급지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접한 경찰서들의 피유치인을 모아서 유치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7) <그림 3> 유치인 입출감동선 경로 참조

18) <그림 4> 유치인 남녀 출입구 및 동선 구분 참조

19) <그림 5> 남녀유치인 출입구 및 동선의 통합 배치 사례

배치보다는 동일공간의 사용시간대별 분리방식이 적용되고, 간이 파티션으로 여성유치인이 수용된 유치실 전면 일부를 가려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림 5> 남녀유치인 출입구 동선의 통합 사례

⑶ 국내 경찰서 유치장의 문제점

국내경찰서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환경적 제어', '환경적 지원', '업무적 지원' 세 가지 지표로서 분석하여 다음의 <표 8>로서 제시한다.

<표 8> 국내 경찰서 유치장의 문제점

지표	요소	정의
환경적 제어	배치	• 수사지원팀에서 진입 가능한 유치장 배치로써, 호송차로부터의 유치장동선 배제 • 유치장 위치는 대부분 북향의 불리한 배치 • 유치홀에서 남녀공간구분 미흡하여 남녀출입문 구분 무의미 • 현재는 유치장 내 유치실 vs 유치 홀 vs 부대시설로 분할 • 기존 경찰서 유치장 내부공간 분할비율의 임의성 문제. • 개실별 최소 면적기준의 부재, 유치장의 구획별 적정면적배분의 기준 부재로 인한 공간낭비의 발생
	동선	• 입출감 동선 노출(중앙현관-형사과-복도-수사과-유치장)로 인해 피의자 신변보호 곤란 & 도주 우려 • '주출입문 2개(남녀) + 비상구 1개(외부 면함)'로 보안출입 동선체계가 복잡 • 유치장은 1층에 주로 배치되어 있으나, 2층 혹은 지하1층에 배치된 유치실들을 폐쇄하여 공간 사용 효율 저조
	구획	• 외부 호송차로부터 유치장 진입까지의 보안 절차, 단계가 없음 • 수평 보안구획 : 2단계 (수사지원/수사팀 ⇔ 유치장)
업무적 지원	출입통제	• 유치인 이동 통제 및 보안에 대한 기준 미흡·유치인 입출감 업무(신체검사, 수법영상촬영 등)를 위한 공간구획 필요 • 유치인감독관은 유치장 외부출입문 열쇠,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장 내부문의 열쇠를 관리하여 출입통제를 이원화 필요 • 비상(화재, 난동, 사고)상황에서 유치장 보안출입복도의 개폐가 신속원활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
	보안	• 유치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제어(환경, 소방, 피난)시스템 미비 • 국내 경찰서 유치장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에서 유치장 보안의 출입 단계, 유치장 내부 개별공간 배치 상의 위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임의성이 내제
	보호	• 유치인 생활지원을 위한 의식주 생활지원, 접견지원(일반인 접견시 면회 관찰), 목욕지원, 진료지원 필요 • 유치인 보호를 위한 인권, 사회적 약자(청소년, 장애인, 주취인, 외국인) 보호 필요
환경적 지원	인권	• 경찰서 유치장이 수사와 유치의 분리가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어 인권침해의 문제요인이 내제 • 06' 개정된 "유치장 표준설계 규칙"에서 운동실, 의무실 시설조항 누락의 문제
	생활	• 생활 편의제공기능이 유치장시설설계 및 운영에 임의 반영되는 문제 • 유치실, 유치인, 유치인보호관 사이의 상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 개방형 유치스테이션 홀에 면하여 배치된 유치실의 성별 공간구획 불분명성 문제 • 의식주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체계적인 지원 미비의 문제

첫째, 환경적 제어 지표에서 거주조건으로 불리한 서북향 배치, 유치장 내부공간 분할비율의 임의성, 입출감 동선 노출과 호송차로부터 유치장까지의 동선 보안 미비, 유치실 2개층 중 1개층 폐쇄하여 공간 사용 효율 저조하며, 유치장 진입단계의 보안구획이 2단계로 짧고 유치장 내부가 단일 보안구획으로서 경중의 차이가 없다.

둘째, 업무적 지원 지표에서, 유치장 내부 모든 실 전체가 홀에 면하여 업무진행이 항시 노출되고 있으며, 출입제어 및 시설제어 시스템이 미흡하여 아날로그 접근방식으로 되어있다.

셋째, 환경적 지원 지표에서 수사와 유치의 분리가 미비하고, 유치인 상호간 그리고 유치인과 유치인보호관 상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고, 의식주에 대한 지원 시스템 등이 공간에 반영되지 않았다.

3.2. 법무부 교정시설의 유형 및 시설 특성

법무부 교정시설은 법무시설기준규칙에 근거하는데,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및 출입국관리시설의 신축, 증·개축의 시설기준이 된다. 시설의 배치, 소요실의 종류 및 최소면적기준, 개구부의 크기 및 창문의 높이 등이 표준설계로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설계시 적용의 정도에 임의성이나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호송차로부터 건물로의 입출감동선, 건물내 이동동선도 노출되지 않고 구획별 보안과 보호가 철저하여 경찰서 유치장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적 제어가 우수하다.

<표 9>「법무시설기준규칙」

분류	법무시설 기준 규칙
목적	• 원활한 법무행정 수행과 효율적인 사무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무시설의 신축·증축·개축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시공 및 동 시설의 취득, 배정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및 출입국관리시설의 신축, 증·개축, 기타시설의 취득 및 배정을 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함
검찰 구치감 도면사례 경찰 호송소 도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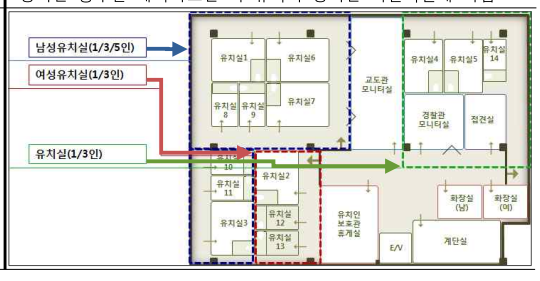

출입통제는 호송차 주차장으로부터 인접한 1층 신입실로부터 시작되며, 이곳에서 신원확인, 신체검사, 의복지급, 호송장비착용 등이 이루어진다. 남녀 수용 거실은 층 혹은 동이 구분되어 있고 동성의 교도관이 보호를 하고 있다. 수평동선 상의 주출입구 및 층별 출입구에 이중 잠금장치가 있고, 수직동선 상의 엘리베이터는 중앙통제실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 출입통제가 철저하다. 시설 외

곽은 동작감지기, 적외선카메라 및 CCTV영상감시 시스템 등이 있고, 건물실내는 CCTV영상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수감자의 생활지원시설, 접견시설, 진료시설, 교육시설 및 근로시설 등이 일정기준이상 갖추어져 있고 교도관의 출입통제, 보안, 보호를 위한 업무적 지원이 우수하다.

거실 영역에 순찰을 위한 순환복도가 있으며, 주복도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가 되고 주복도에 설치된 난방기로부터 거실로 난방이 공급되어진다. 복도 및 거실에 CCTV장비로 간접감시를 할 수 있어 순찰을 통한 직접감시와 병행한다. 인터폰으로 층별 통제실 혹은 교도관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거실문은 RFID카드키로 개폐를 제어하며 이중 잠금장치로 보안을 유지한다.

환경적 지원 관점에서 교정시설 수감자의 생활편의제공기능은 기준에 맞게 갖추어진 편이므로, 24시간~최대 10일까지 수용되는 경찰서 유치장시설이 임시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갖추지 못한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보장을 표준기준으로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경찰서 유치장과 규모면에서 유사한 구치감의 경우, 남녀 구금자 거실 구획이 분리되어 있고, 순환복도가 있는 점에서 교도소, 구치소와 동일한 배치유형이다. 특히 호송차주차장은 1층에 있고 폐쇄형으로 운영되어 보안시스템이 갖추어지고, 2층에 구치감을 두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고, 거실복도에 창문(바닥에서 1200~1500mm이상)을 둘 수 있어 채광통풍을 위한 조건이 경찰서유치장(바닥에서 2500mm 이상)보다 양호하다.

<표 10> 국내 법무부 교정시설 실태 분석

지표	요소	정의
환경적 제어	배치·동선·구획	• 교도소, 구치소 입출감 동선 : - 수용동 1층(호송차전용 보안주차장, 입출감 신고공간, 공용공간), 거실은 2층이상 상층부위치하여 개구부(창문) 설치가능 & 쾌적한 생활환경(환기.채광,통풍) 보장 • 검찰청 구치감 입출감 동선 : - 구치감은 2층에 위치, 1층 호송차전용 보안주차장 통과, 2층 진입. 1층의 민원인에게 유치장위치 노출 최소화, 별도의 지하통로 이용, 검찰/법원 출두하는 피의자/피고 이동동선 보호 - 검찰수사와 호송의 분리업무 - 야간시간대의 구치감 수용자 없음
업무적 지원	출입통제·보안·보호	• 교정시설의 출입통제 및 보안 • 교정시설 전체(상황실), 수용동별 층별(통제실) 보안 담당분야의 업무 분리 및 공조가 명확 • 다양한 보안장비시스템의 구축(적외선감지기, CCTV카메라녹화, 경보등, 경보벨, 인터폰) 및 육안감시시스템(순찰)적용 • 피구금자 호송 및 교정시설 내 교정업무를 담당 • 교정시설 내 피구금자 보호 및 생활지원 업무
환경적 지원	인권·생활	• 국내에서는 1992년 제정된 법무부훈령 제 271호 이후 - 제296호, 제413호, 475호, 565호, 665호, 848호 및 2011년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 848호에서 "법무시설기준규칙"으로 "법무시설의 신축·증축·개축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시공 및 동 시설의 취득 및 배정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및 출입국관리시설이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시설별, 동별, 실별 최소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 설계 시 적용 •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따라 교정시설 등은 성별로 분리된 교정시설, 수용동, 거실 및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고, 남녀교도관이 운영을 전담 • 수용동 내 구금 생활의 의식주 지원체계 및 기준 명확 • 수용동 내 다양한 기능의 생활편의시설 배치기준 적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국제공항에 임시보호소가 설치되어 있고 1일~1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보호를 하며,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남녀 유치실이 분리되어있으나 복도의 보안출입구를 보호관 2명이 양측으로 통제하고 유치인들의 복도에서의 이동이나 전화통화는 자유롭다. 유치실내부와 복도에 CCTV시스템이 설치되어 보호소사무실에서 영상감시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3.3. 해외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 실태

(1) 일본 경찰서 유치장

일본 경시청은 '수사와 유치의 조직분리'를 1980년 제정한「교도 및 유치시설법(혹은 형사수용시설법)[20]」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법 시행 전에는 ①일본경시청(형사부), 지방경찰청 산하의 ②지방경찰본부(형사수사과)와 ③경찰서(형사수사담당)에서 수사와 유치를 모두 담당하였다. 1980년 상기 법 제정 이후 ①일본경시청의 수사서비스(형사부)와 유치서비스(사무국), ②지방경찰청 산하 지방경찰본부의 수사서비스(형사수사과) 및 유치서비스(행정/경무과)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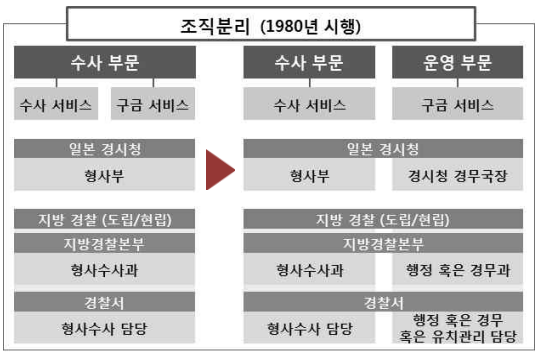

<그림 6> 일본경찰 수사와 유치 조직분리(1980년 시행)

<그림 7> 일본 동경경시청「경찰서 유치장표준설계」배치

20) The Penal Detention Facilities Act
21) <그림 5> 다이어그램은 일본 동경경시청 자료를 참조함.

일본 경찰서유치장은 3층 이상의 위치에 배치되고, 1~2층은 민원실, 민원인의 방문빈도가 높은 부서나 교통담당부서같이 외근부서가 배치되는 수직적 공간의 위계성이 있다. 유치인의 유치장 입·출감 경로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호송차까지의 이동을 보안 통제한다. 일정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 수 있어 감시 및 통제가 용이한 외부 순환복도[22]가 유치거주 영역의 사면에 있으며 순환복도의 외부벽면 창문은 개폐가 가능하여 유치실로의 채광, 환기, 통풍이 간접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치실은 1인실(보호), 3인실(청소년), 5인실(성인)로 구성된다. 성인 남성유치인 거주영역은 여성청소년 영역과 분리되어 있다. 특히 유치장 및 유치실 보호를 위한 관찰은 주복도 및 일부 유치실(보호실)에 설치된 영상감시시스템(CCTV 카메라)과 모든 유치실 화장실에 설치된 지능형감시시스템(동작감지기)에 연동되는 시청각경보시스템(경보벨, 경보등)으로 이루어지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유치보호사무실의 주 제어패널 및 모니터로 유치실과 보호유치실 등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유치인 입출감 현황은 벽면매립된 터치스크린에 실시간 입력하고 일과 현황도 전광판으로 중계한다. 간접감시시스템과 함께 일정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병행하는 직접감시를 하고 있으며, 유치인보호관은 담당영역에 1인 유치관리 스테이션의 보조 제어패널(벽면부착)로서 유치인의 화장실사용 등을 감지할 수 있고 유치실 조명제어 등을 할 수 있으며, 비상전화로 경찰서 경비실과 소통할 수 있다. 유치실은 유치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창살외부(복도측) 하부 면에 불투명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을 부착하고, 자해방지를 위하여 내부(거실측) 전면에 매쉬 패널을 부착하였다. 유치실 화장실 문 상부는 끈을 걸지 못하는 경사면형태로 제작되어있고, 동작감지기를 천정에 설치하여 화장실사용개시 및 일정시간경과 후 움직임 없음을 경고음으로 경고하여 유치인보호관이 자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표 11> 일본 경찰 유치시설 실태 분석

지표	요소	정의
환경적 제어	배치·동선·구획	• 일본 경찰유치장 : 수사와 유치의 분리관리 (1980년) • 동경경시청 유치장 : 수직/수평의 보안구획 - 수직보안구획 (호송차전용주차장⇔전용엘리베이터⇔보안출입구) - 수평보안구획 (보안출입구⇔유치전이⇔유치거주) • 하라주쿠경찰서 건물(도심위치, 민간개발, 15층규모)의 4~7층에 유치장배치, 유치장 전용엘리베이터로 지하1층 호송차 전용주차장에서 직접 수직 진입하는 유치인 입출감동선, 3층에 유치관리계 사무실 배치
업무적 지원	출입통제·보안·보호	• 일본 동경경시청 유치장 : 보안단계별 공간위계를 구획하고, 개별 유치보호관의 담당구획 별로 보안키를 구분하여 지급, 보안/보호 업무의 범위/책임이 명확함 • 유치당직스테이션의 [컨트롤패널(벽면 매립)] ①유치인 현황 모니터 ②유치장 내 활동 현황 전광판 ③CCTV 모니터링(보호실) ④보안경보시스템(접견실/유치실/유치인화장실 모션센서) ⑤비상전화(경비직통) ⑥유치실환경제어(조명,WC사용유무)
환경적 지원	인권·생활	• 일본은 "교정 및 유치 시설과 재소자와 구금자 처우에 관한 법(교정유치시설법)"으로 교정시설과 경찰유치시설의 운영근거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1980년 이후 경찰 유치시설에서의 수사와 유치의 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유치인 생활을 철저히 지원하고 있음

(2) 호주(NSW주) 경찰서 유치장

NSW주 경찰서 내 유치장은 교도소 이송전 임시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주정부소속 교도소가 있어 형의 집행 혹은 미결구금 형태로 수감되는 유치인을 수용한다. 유치장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는 NSW Police Act 1990(경찰법)에 의한다. 유치장표준설계 규정은 NSWPF Building Standards & Specifications가 있다. 구금기간(수시간이나 익일까지 구금)에 따라 임시유치실(Dock)과 유치실(Cell)으로 구분하고, 임시유치실(Dock)은 벽에 돌출형 의자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대기하는 유리문이 있는 시설이며 유치실(Cell)은 침대 및 화장실이 있는 구금시설이다.

(3) 영국 경찰서 유치장

영국경찰은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의 CodeC에서 유치, 처우 및 심문에 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법에 따라 수사와 유치가 분리되어 유치장 전담 정복경찰인 Custody Officer가 유치인을 전담하며, 호송차주차장으로부터 유치장내로의 이동경로가 별도의 유치장 전용출입구를 통하는 보안이 유지되고, 출입구에 인접하여 유치스테이션 맞은편으로 임시유치실이 있다. 지문채취 및 신원조회공간이 전용출입구에 인접해 있고, 신체검사실, 의무실, 조사실 등이 홀에 면해 있으며, 유치실 영역은 성별로 구획되어 복도에 면하는 1인 독거실 체제로 운영되며, 침상에 비닐커버 매트리스가 얹혀있고 스테인리스스틸 화장실변기는 칸막이 없이 유치실문 옆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8>「호주(NSW주) 경찰서 유치장표준설계」배치

22) 참조: <표 7> 접근방법에 따른 수용동 분류, 이영수·문영삼,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207호, 2006.1, p.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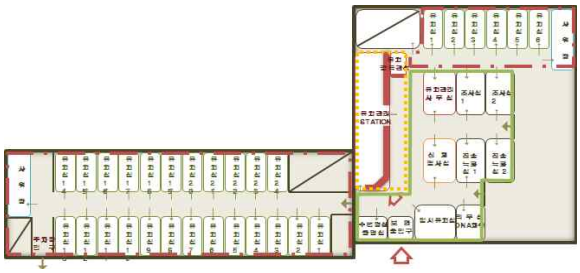

<그림 9>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경찰청「S경찰서 유치장」배치

3.4. 소결

해외의 선진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은 보안구획과 유치인 동선분리에 의한 환경적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있다. 특히, 업무적 지원시스템의 경우 일본, 영국이 우수하다. 환경적 지원은 ①유치장관리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수사와 유치의 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②유치장 근무를 전담하는 직원 혹은 경찰관이 있으며, ③여성유치인을 여성경찰관이 보호하며, ④광역유치장의 경우 남녀유치인영역의 분리가 성별 전용 유치실 영역으로 구획되어진다. 따라서 유치인의 유치장 내 인권을 보호하는 유치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국내 경찰서의 경우, 수사와 유치의 분리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유치실 수용방식이 독거제가 아닌 혼거제(5인 이상~최대6인수용)를 취하고 있어 유치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이 운영시스템에 내제됨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 밖의 운영현황은 양호하여 유치장 운영매뉴얼이 있고, 선진국 방식에 준하여 전문직원인 유치인보호관제도(2년간 근무)와 여성경찰관이 동성의 유치인을 보호하는 법적규정이 준수되고 있다.

<표 12> 해외 및 국내 경찰서 운영현황 비교

구분	유치장 관리	전문 직원	여성 직원	유치장 규모	유치실 수용	근무 방식
미국	순찰, 전문부서	유치장 전종 직원	여경배치	뉴욕:지구 경찰서별 운용 휴스턴 및 해리슨 카운티: 중앙집중식유치센터 운용	혼거제 (2~4인, 20이상)	3교대
영국	유치전담 정복부서	유치장 전종 경찰관 배치	여경배치		독거제	4교대
캐나다	순찰부서	경찰관 1명 교대근무 마다 배치	여성전용 유치장 在, 여경배치	토론토 17개경찰서, 지역별 거점유치장 5개		3교대
호주	유치장 담당	유치장 전종 경찰관 없음	여경 배치 없음			
일본	경무과	유치장 전종 근무 경찰관	여성전용 유치장 在, 여경 배치	동경: 102개 남성유치장, 여성유치장5곳 포함, 총107개 경찰서유치장	혼거제	4교대
한국	수사과, 경무과	유치장 전종 근무 경찰관	여경배치, 당직여경	일반경찰서 유치장 혹은 광역유치장 운용	혼거제 (6인)	3교대

4. 유치장 표준설계의 방향

국내외 경찰서 유치장 및 법무부 교정시설을 공간·환경·업무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3장에서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서 유치장 표준설계의 방향을 ①환경적 제어 지표의 공간프로그램, 공간위계성, 보안단계 ②업무적 지원 지표의 통제시스템, 프라이버시 ③환경적 지원 지표의 공간구획, 생활지원과 같은 세부항목들로서 다음의 <표 13>에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표 13> 유치장표준설계의 방향 제시

분류			표준설계 방향
환경적 제어	배치	공간 프로그램	• 경찰서 급지별 유치실 적정개수 • 유치실 vs 유치스테이션 홀 vs 부대시설의 적정 면적비 제시 • 소요 실별 최소면적기준 제시 • 유치장 내 기능별, 특성별 조닝 필요: 관리공간, 전이공간, 생활공간, 유치거주공간 소요실의 제시에 소요실 그룹의 제시
	동선	공간 위계성	• 입출감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수평적인 공간의 위계와 수직적인 공간의 위계 정립이 필요하며, 공간위계별 사용자 구분과 공간기능을 확실하게 설정 -유치관리(수사, 접견)⇔유치전이(입출감, 의료)⇔유치생활(편의, 거주) • 수직 공간위계: 호송차전용주차장⇔엘리베이터⇔유치장 • 수평 공간위계: 유치관리⇔유치전이⇔유치거주
	구획	보안 단계	• 경찰서에 호송차 도착시점부터 유치장까지의 보안 설정 • 수직 보안구획 : 3단계 (호송차전용주차장⇔유치장전용계단/엘리베이터⇔유치장) • 수평 보안구획 : 3단계 (상황실,형사당직실⇔유치인감독관실⇔유치장)
업무적 지원	출입통제	통제 시스템	• 유치장부대시설, 유치실 업무현황, 환경의 통합통제 필요 • 유치인보호관의 통제/보안/보호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통합통제시스템이 패널벽체로서 유치스테이션과 함께 배치될 필요
	보안·보호	프라이버시	• 유치인의 유치실 생활 프라이버시와 함께 유치인보호관 업무 프라이버시 보장 필요 • 유치관리스테이션의 업무용 컴퓨터, 기타 제어시스템을 보호 할 필요
환경적 지원	인권	공간 구획	• 유치장 내 유치실 성별공간구획의 분리 필요 • 유치실 내 화장실의 심리적, 물리적 안전 보장 디자인 필요
	생활	생활 지원	• 운동실, 의무실, 목욕실, 침구보관실, 영치물품보관실, 세탁실, 청소용품 및 쓰레기 분리수거실 등에 대한 실별 설치기준 필요 • 기타 실별 가구 및 고정장치 설치기준 필요

업무적 지원 지표에서 통합제어시스템의 세부항목들을 다음의 <표 14>에서 제시한다.

<표 14> 통합제어시스템 기준항목

분류	분석
보안제어	• [입출감 현황입력 터치스크린] 1차 보안복도 내부에 설치검토 • [비상전화]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설치 검토 유치감독관실, 상황실, 형사당직실 상호간 직통전화시스템 • [경고등, 경보벨] 비상출입문, 유치실문, 유치실화장실문 개폐 경고 • [비상벨] 운동실, 의무실, 신체검사실, 접견실, 조사실, 보호실 및 유치관리스테이션, 홀 및 통로공간에서의 비상사태경고
유치관리 스테이션	• 별도 공간구획으로 업무영역을 구축, 육안 감시시스템으로부터 IT감시모니터링장비 이용한 인텔리전트 감시시스템으로 전환[컨트롤패널]=[보안제어패널]+[시설제어패널]
시설제어	• 환기팬, 냉난방기, 조명등 등의 시설제어시스템 설치
비상벨 스위치	• 최대한 모든 소요 실 및 복도 등에 설치
게시판	• 유치인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청소년, 장애인, 주취인, 외국인) 보호 관련 안내문을 영상시스템으로 게시
현황 전광판	• 감독관실, 상황실, 유치스테이션에 설치하여 유치장에서 진행되는 유치인 현황을 공지하는 전광판 시스템의 입력프로그램 구축을 추후 권유

5. 결론

국내 경찰서 유치시설과 법무부 교정시설 및 해외 경찰서 유치시설의 실태조사를 하여 현황, 문제점 및 장단점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유치장 표준설계” 기술연구에 적용하게 될 공간계획의 주요 개념 및 세부 적용 방안들을 추출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경찰 유치시설과 국내 교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헌자료 및 법 규정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유치장표준설계를 위한 방향을 세 가지 지표로서 설정하고 ①환경적 제어에 대한 기준항목: 배치기준이 되는 공간프로그램, 동선의 단계별 공간위계성, 보안구획을 결정짓는 수평·수직 보안단계 ②업무적 지원에 대한 기준항목: 유치장시설 출입에 대한 통합 통제시스템, 유치장 업무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유치인을 보호해야하는 이중 의미의 프라이버시 보장 ③환경적 지원에 대한 기준항목: 인권을 보호하는 성별공간구획과 심리적·물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디자인, 유치장 내 거주를 위한 생활지원에 필요한 모든 소요 실별 설치기준 등등 필요한 세부적용항목을 추출하였다.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의의는 실제로 운용 중인 국내외 유치 및 교정 시설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법 규정 및 운영방식을 조사하고, 경찰서 유치장 표준설계도면의 현실적 반영정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데 있다고 보며, 추후 경찰서 유치장 표준설계에서 적용가능한 주요 지표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추출하고 미래를 위한 표준설계 방향을 제시한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표는 유치장운영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도주, 자해, 자살사고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선진국수준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유치장환경 기준정립으로서 근본부터 해소하고자 하였던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연간 10여만 명 이상이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가는 현 시점에서, 인권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법집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경찰서 유치장을 개선하려는 경찰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추후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장표준설계” 기술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고문헌

1. Home Offic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CODES OF PRACTICE A-G, 2005 ed., London: TSO, 2005
2. National police Agency, Japan, Police Detention Administration in Japan, 2012
3. 刑事收容施設及び被收容者等の處遇に關する法律, 平成19年 5月25日法律第10号(最終改正:平成19年6月15日法律第88号)
4. 경찰청, 유치장 관련 법령 및 판례, 2012
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5
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0
7. 기하리·남경숙, 치유환경으로서 교정시설 수용동의 실내 환경계획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82호, 2010.10
8. 김태명, 경찰서유치장 관련법령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2008
9. 이상훈,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2.6
10. 이영수·문영삼, 국내교정시설의 건축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207호, 2006.1
11. 이영돈, 유치장과 피의자 유치의 법적근거, 치안논단⑧,
12. 임준태,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치안논업 제17편, 2001
13. 임준태, 유치장내 질서유지와 신체수색의 한계- 미국과 영국 경찰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2002
14. 경찰청, 유치인수용현황 통계자료, 2011
15. 경찰청, 해외경찰관서 자료수집 협조 자료, 외사과, 2011
16. 경찰청, 유치장 관련 업무보고자료, 경무과, 2012

[논문접수 : 2012. 11. 07]
[1차 심사 : 2012. 12. 22]
[게재확정 : 2013. 01. 09]